

AI혁신위원회 규정

2026. 01. 01. 최초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의 AI 기반 대학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AI혁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AI 기반 대학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
2. AI 기반 대학 혁신 전략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 개편 및 학사제도 혁신에 대한 AI 활용에 관한 사항
2. 학생지원·성과관리·행정지원에 대한 AI 기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
3. AI 혁신 관련 산학연계 및 대외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교학부총장,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당해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.

③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의 장이 위촉하며,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4조(임기)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②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직원으로 한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에는 의장과 출석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조 요구 및 이행 의무) 위원회 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 부서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운영 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경비지원 및 보상)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의

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